업무 제휴 계약서

주식회사 AAA 와 "공동사업자"인 주식회사 BBB(이하 AAA 사와 BBB 사를 "회사"라 통칭한다.) 그리고, 주식회사 CCC(이하 "제휴사"라 한다.)는 "회사" 및 "공동사업자"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"의 영업 등에 관한 업무 제휴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.

- ☑ 계약서 전문(Preamble)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전문 규정은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 내지 계약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- ☑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당사자 기업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각 기업들의 지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제휴되는 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 규정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제1조 [목적]

본 계약은 "회사"가 서비스하는 ____사업과 관련하여 "제휴사"가 제휴사의 ____영업 등에 대한 서비스 제휴를 명확하게 하고, "회사"와 "제휴사" 간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[정의]

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[aaa]라 함은 _____를 말한다.
- 2. [bbb]라 함은 를 말한다.
- 3. [가맹점]이라 함은 실 매장을 소유함으로써, 해당 실 매장에 ____를 설치하여, "회사"에서 제공하는 "상품"의 유통/공급을 전담하는 오프라인 가맹 거래처를 말한다.
- 4. [고객]이라 함은 ____를 통하여 "회사"에서 유통하는 "상품"을 구매 또는 소비하는 이용자를 말한다.

- 5. [영업대행 수수료]라 함은 "제휴사"가 "회사"를 대신하여 오프라인 "가맹점"의 계약을 대행함으로써, "회사"와 "공동사업자"가 "제휴사"에 지불해야 할 약정된 수수료를 말한다.
- 6. [광고대행 수수료]라 함은 "회사"와 "제휴사"가 "광고주"를 대상으로 하여 상품을 수주 한후 "가맹점"의 ____ 내 "상품"을 판매 또는 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경우에 "광고주"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"회사"와 "제휴사"가 각각 규정된 지침대로 서로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말한다.
 - ☑ 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정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야 합니다. 또한 표현은 획일적이고 단순하여야 합니다.
 - ☑ 업무 제휴 계약서의 경우 업무의 내용, 가맹점, 고객, 수수료의 정의를 객관적으로 규정 하여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["회사"의 권리와 의무]

"회사"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회사"는 "제휴사"가 "가맹점" 유치 및 광고를 위한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"가맹점"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.
- 2. "회사"는 "제휴사"가 본 계약에서 정한 "제휴사"의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써,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.
- 3. "회사"는 "제휴사"가 원활한 영업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한다.
- 4. "회사"는 "제휴사"의 원활한 설치활동을 위하여 배송 및 설치업무를 성실히 지원해야 한다.
- 5. "회사"는 "제휴사"가 유지보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"제휴사"가 요청하는 부품 및 소모품을 "회사"의 전국 총판을 통하여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.
- 6. "회사"는 "제휴사"의 관리 "가맹점"에 대한 "상품"의 판매금액 조회 등을 위한 관리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"제휴사"에 제공하여야 하며, "상품" 이용자에 대한 고객 응대를 위한 별도의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.
- 7. "회사"는 "제휴사"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"회사"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, "회사"는 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전적 비용과 사업적 기회손실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"제휴사"는 과실부분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.

제4조 ["제휴사"의 권리와 의무]

"제휴사"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제휴사"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영업과 유지보수 등 양사가 합의한 역할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.
- 2. "제휴사"는 가맹점 유치영업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3. "제휴사"는 "가맹점"에 설치함에 있어 관리 책임을 지며, 회수 및 반품 등의 사유 발생시 "회사"와 협의 하에 성실히 이를 수행한다.
- 4. "제휴사"는 유지보수를 담당함에 있어 "회사"가 지정한 총판업체로부터 부품 및 소모품을 공급 받아 진행한다.
- 5. "제휴사"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"회사" 이외의 사업자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.
 - ☑ 권리 의무 규정은 본 업무 제휴 계약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,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, 의무 이행의 내용, 비용의 지급, 유지 보수 등 제반 지원 사항 의무,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 권리 내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.
 - ☑ 특히 구체적인 의무 위반시에 따른 법적 제제를 규정하는 경우,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
제5조 [판매수수료 및 광고단가 조항]

- 1. "회사"는 "제휴사"의 기존 가맹점에 대하여 ____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. 단, "제휴사"의 신규 "가맹점" 오픈 시에는 ____를 ___만원(부가세별도)에 공급한다.
- 2. "회사"는 "제휴사"와 공동 광고영업 시 광고단가를 1대당 __만원으로 산정하며, 초기 3개월 동안 발생하는 모든 광고 수익은 가맹점에 리워드로 모두 보상한다. 약정한 3개월 후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"제휴사"와 적정가를 추후 산정하여 부속합의계약서로 작성한다.
- 3. "제휴사"는 회사의 공동 광고영업 시 광고단가를 PC모니터 1대당 ***원으로 산정하며,
- 4. "회사"와 "제휴사"의 판매수수료 및 광가단가 유형은 아래와 같다.
 - ☑ 업무 제휴 계약에는 각종 수수료 및 단가가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, 각종 수

수료는 제품 개수에 따른 비용, 발생 수익에 대한 비율 계산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[유지보수 및 서비스 제공시간]

- 1. "제휴사"의 "가맹점"에 대한 유지보수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이다.
- 2. "제휴사"는 "가맹점"으로부터 유지보수 요청 접수 시, "회사"가 지정한 총판업체를 통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제공해야 한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, 사 유 발생 직후 "회사"와 일정을 별도 협의할 수 있다.
- 3. "회사"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기점검 또는 기술적 필요에 의해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"제휴사" 및 "가맹점"에게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, "회사"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.
 - ☑ 유지 보수 내지 관리 규정에 있어서,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지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유지 보수 의무의 시기,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, 특히 유지 보수 의무 위반시 제제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필요가 있습니다.

제7조 [판매수수료 및 광고수익 정산]

- 1. "회사"는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"가맹점" 유치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매 월 산정하여 "제휴사"에 지급한다.
- 2. "제휴사"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판매기준일을 거래 당 월의 말 일로 하고, 월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"제휴사"는 세금계산서를 "회사"에게 익월 10일 이내에 월 1회 청구 발행한다. 단,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입금 월의 1일자로 한다.
- 4. "회사"는 "수수료" 정산 내역을 전자적 방식으로 "제휴사"에 제공하며, 익월 말 일까지 "제휴사"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.
- 5. "회사"의 사정으로 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 "회사"는 "제휴사"에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6.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, 익 월 정산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

다. 단, 사안이 중대할 경우, 양 사간 협의 하에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9조 [저작권 및 제휴 준수사항]

- 1. "제휴사"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유권, 저작권, 라이선스권 등의 권리를 사용해야 할 시 "회사"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"회사"와 "공동사업자"가 정한 범주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.
- 2. "제휴사"는 "회사"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허용된 권리를 어떤 경로로도 사용할 수 없다.
 - ☑ 지식재산권의 보유자 내지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 입니다. 업무 제휴 시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 보다 업무 제휴 계약서 내에서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

제10조 [계약기간]

- 1.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
- 2. "회사" 또는 "제휴사"는 계약해지 시 계약 해지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며,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 - ☑ 계약 기간은 의무 이행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전에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규정을 위와 같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계약 기간 규정을 둔 경우, 계약 만료일 부근에서 계약서 상의 갱신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제11조 [계약의 해지]

"회사"는 아래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"제휴사"에게 서비스 중단•제한•해지를 할 수 있다.

- 1.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2.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때
- 3.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경우
- 4. "제휴사" 또는 "을의 하위 조직"이 위•변조에 의해 불량 매출,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거

나 고의적으로 매출정보를 조작하여 중복 또는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때

- 5.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☑ 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 규정은 약정 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이후 사유 발생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.

제12조 [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]

- 1. "제휴사"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"회사"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각종 담보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- 2. "제휴사"가 당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일 30일 이전에 "회사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"회사"는 "제휴사"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3조 [손해배상]

- 1.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"회사"와 "제휴사" 중 그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,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.
- 2.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, 폭동, 전쟁, 테러, 정부의 조치, 시민봉기, 파업 기타 자기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.
 - ☑ 손해배상 규정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, 업무 제휴의 내용에 따라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면, 이후 당해 사유 발생시 곧바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

제14조 [정보유출 금지]

- 1. "회사"와 "제휴사"는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.
- 2. "회사"와 "제휴사"는 동조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

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- 3.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- 4. "회사"와 "제휴사"는 업무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영업에 관한 자료, 고객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된 경우 그 책임 을 진다.
 - ☑ 최근 기술 유출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따라 서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본 계약서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발생시의 위약금, 위약벌 등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제15조 [통지 의무]

- 1. "회사"와 "제휴사"는 계약체결 당시 기재한 주소지로 본 계약에 의한 통지를 하며, 만약계약기간 내에 그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
- 2. "회사"와 "제휴사"는 서비스 중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면에 의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- 3.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에 의해 통지하며, 그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뒤에 발생한다.

제16조 [관할 법원]

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"회사"와 "제휴사"는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차원에서 결정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을 "회사"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인 "회사"와 "제휴사"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

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.

| "회사" | | "제휴사" | |
|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주식회사 | | | |
| 경기도 | | | |
| 사 장 | (인) | 대표이사 | (인) |
| | | | |
| "회사" | | | |
| 주식회사 | | | |
| 서울시 | | | |
| 대표이사 | (인) | | |